



# 정보산업의 발달에 따른 법의 변화 -컴퓨터를 中心으로-

權 寧 高 (중앙대 교수·공법학)

## I. 문제영역의 개관

현대사회의 성격구명에 있어 최소한 그 한 측면을 이루는 것으로서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내지 정보화사회를 흔히들 듣다. 이는 정보의 생성과 응용이 컴퓨터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른바 제3차 산업혁명의 한단면을 가리키는 것임은 물론이며 바로 그러한 뜻에서 “정보혁명(Revolution of Informatics)”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리고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는 이 새로운 국면을 “정보의 시대(Information Age)”로 규정짓기도 하는 것이다.

아동은 정보사회는 몇가지 국면과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산업화』로부터 『산업의 정보화』로 그리고 『가정의 정보화』 및 『사회의 정보화』로 이행됨은 물론이다. 제1단계를 산업에의 컴퓨터 도입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처리기술이 고도화하는 단계라면, 제2단계는 이같은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결합과 응용에 따른 전국적 정보망의 구축과 그에의 용이한 접근 및 양방향 통신과 정보취득이 이루어지는 고도정보화의 단계인 바 일본의 경우 바야흐로 제2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본다. 우리사회에 대한 여러 분석과 예측에 따를 때 2000년에는 우리도 전국적 정보통신망이 구축되는 제2단계로 진입할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같은 인식하에 우리나라도 1983년을 『정보산업의 해』로 정하고 같은해 정보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의 전산화를 위해 그에 앞서 1975년에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대통령령 제7646호)를 구성하였었다. 그뒤 1986년에 들어와서는 이와 관련된 입법적 노력이 두드러지게 되는 바 『전산망보호법』과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같은해 제

정·공포된 것은 정보사회에의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실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 할만 하다. 뿐만 아니라 다음 해인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가의 『정보개발』을 최초로 명문화하였던 것이다.

이미 도래한 정보사회 내지 전산화시대의 전개에 대응된 법과 법학영역에서의 변화 및 발전 또한 이미 그 윤곽이 드러났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할 것이다.

법과 법학의 방법론적 측면에 컴퓨터가 미친 영향은 비록 현단계의 우리나라에서 대단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변화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법전편찬이나 판례집에 다른 무엇보다도 변화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는 입법량에 비추어 종래에 우리가 써 오던 법령집체계의 효용성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달았다고 볼것이다.

비록 대륙법계의 판례를 영미법계의 그것과 견줄 수는 없으나 오늘날 날이 갈수록 판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이 분명하며 더구나 그 양의 방대함에 비추어 적요(digest)와 『シェ퍼드식 인례 색인화(shepardizing)』같은 작업을 손으로 처리함 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 행정청의 각종 처분과 결정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요컨대 컴퓨터를 통한 법률정보의 기억과 검색(legal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by computers)만이 그 정보량의 증대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이 아닐 수 없다. 이점에 관하여서는 약 20여년의 시간을 투입하여 완성시킨 미국의 CALR(computer-assisted legal research) 즉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방법체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많을 것이다.

## II. 컴퓨터의 기능과 법

컴퓨터는 현대의 전자공학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신속·정확하게 자료를 처리하여 인간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종합적인 조직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아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먼저 대용량 기억기능과 고속처리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좀더 세분할 때 첫째,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를 컴퓨터 내부로 읽어들이는 기능(입력: Input), 둘째 자료를 기억하는 기능(기억: Memory), 세째 자료처리의 순서를 지령하는 기능(제어: Control), 네째 입력된 자료나 정보를 처리하여 주는 기능(연산: Arithmetic), 다섯째 처리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밖으로 끄집어내는 기능(출력: Output)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이같은 기능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법률전문가들이 컴퓨터의 이같은 주된 기능과 파생된 여러 구체적 기능들에 관하여 최소한 현단계로서 완벽하게 알고 또 숙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법무에 관련된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에는 전문 프로그래머도 여러달을 걸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실무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컴퓨터의 기능체계에 대한 기초지식은 이제 필수적이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에서 살펴본 컴퓨터의 두 가지 주된 기능의 적절한 결합을 통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판결의 예측을 포함하는 법률전문가의 대체역할을 예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III. 정보산업의 발달과 그 입법적 대응

법이 사회변동에 대하여 유도적이어야 하는가 또는 보완적임에 그쳐야 하는가는 그 자체로써 농후히 철학적인 함축을 갖는 것이며 언제나 논쟁적이지 않을 수 없다. 고도정보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변동의 속도가 빠른 까닭에 그에 대한 여러갈래의 대응 또한 체계적임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국가적 대응의 하나가 곧 법령의 정립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또한 정보사회의 도래를 미리 맞이한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활발히 비교·연구함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정보개발의무의 헌법화는 그 가장 두드러진 예의 하나일 것이다.

무릇 정보사회의 심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은 크게 보아 세갈래로 나타난다.

- (1) 정보관련사업들을 지원·육성하며 프로그램제작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컴퓨터등 기기의 생산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
- (2) 컴퓨터의 활용을 행정사무분야는 물론 생산과정과 금융·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의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 등 그 이용확대를 위한 입법
- (3) 컴퓨터의 보급과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종전에 예상되지 아니하였던 각종 부작용 및 범죄 등에 대응하고 그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우리도 물론 이같은 세가지 목적에 따른 입법례가 적지않게 이루어져 왔고 부분적인 시행착오 또한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도 그의 극복을 위한 여러 입법 논의가 여러 갈래로 제기되고 있다.

즉 아주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 만으로도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의 개정과 전기통신사업법(가칭)의 제정이 그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보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VAN(Value-Added Network : 附加價值通信網)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독점만 시킬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종합적 육성을 꾀하기 위함에서이다.

또 그에 앞서 사회 각분야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극히 부진한 데이터 베이스에 따른 정보욕구의 충족불능현상에 비추어 『데이타공개법(가칭)』의 제정 또한 추진되고 있음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공개를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정보공개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저촉되지 않는 정보는 일반에 개방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든 입법적 노력은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단편적 접근(piecemeal approach)을 벗어나서 체계적 입법을 가능케 할 제도나 운영이 미흡하다는데 있다고 본다.

기존의 입법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이 법률은 최근 고도로 발달되고 있는 전기통

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용어정의조항에 비추어 볼 때 전산망사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각종 정보의 처리·전송 등 정보산업 관련 사업중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대단히 포괄적 입법임을 알 수 있다.

또 체신부장관에게 주어진 전산망개발·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은 국가기관 등의 전산망개발 뿐만 아니라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 이용촉진 및 전문기술인력의 양성등을 포함하게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24조와 제25조인 바 여기서는 전산관련 정보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5조는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규정하고 또 전산망사업자나 사업종사자는 전산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정보의 불법한 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와 전산망사업자가 지득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률의 제29조에 따라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이 되어있지 않은 결과 구체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가 그 시행령에도 명문규정이 없어 앞으로 법적용의 과정이나 판결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이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중인 법률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를 통하여 그 창작의욕을 고취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과 유통 및 관련사업과 기술의 발달을 꾀하려는데 입법의 목적을 두고 있다.

무릇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는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즉 특허법적 접근과 저작권법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보아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를 저작권법안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별개의 단일 법률로 입법하면서도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의 권리자를 저작권법상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게 보호함으로써 사실상 저작권법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법의 제3조에 따라 외국인의 프로그램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상호주의(reciprocity)를 적용하여 우리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제한하고 있음을 본다. 물론 이 법이 현재 시행중이나 우리나라가 국제저작권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결과 쌍무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외국인 프로그램의 일반적 보호는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복제물의 제출에 관하여서는 기업 및 기타 조직에서 장기간 엄청난 비용의 투입을 통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함에는 도용등에 따른 위험부담문제도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제23조에서 업무종사자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겠다.

#### (다) 공업발전법

이 법률은 공업기술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1986년 1월 8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의 합리화추진과 각종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하기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이 그 대상의 하나로 지정되었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사업은 공업기술개발촉진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며 이에 따른 각종 지원뿐만 아니라 시험연구시설의 이용·알선·외국의 관계기관과 공동연구·기술향상을 위한 지도 등 또한 받을 수 있게끔 이 법의 제14조가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할 만 하다.

#### (라)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대통령령

이 명령은 과학기술진흥법을 그母法으로 1982년 5월 24일 제정·공포 되었었다. 여기서 “전자계산조직”이라는 비교적 특이한 용어를 쓰고 있는 바 이는 하드웨어를 의미하며 『이용기술조직』이라 함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오늘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 대통령령에 따른

다면 그 명칭과는 달리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어 혼동의 소지가 크다.

또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산기기의 우선적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격과 성능상 현저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국산기기의 사용이 의무화됨에 유의해야 한다.

## V. 컴퓨터와 사법업무 및 법률 실무

검찰행정이나 사법행정이 행정전산망에 입력되는 첫 단계의 업무는 아니다. 그러나 전산망과는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활용되어 왔었고 전산화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일반행정과는 달리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단편적인 이용이나 법원에서 서기적 업무의 대체 역할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적 업무처리까지도 컴퓨터에 의한 처리가 기대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형량산정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런데 사업행정업무에 있어서 컴퓨터의 활용이 두드러진 또는 두드러질 분야는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벌금이나 과료의 부과 및 징수 또는 법원의 사건기록 및 통계의 작성에 있어서이다. 이같은 업무를 컴퓨터화할 경우 각종 소송비용의 계산 및 청구나 소송진행에 능률을 끄낄 수 있을뿐 아니라, 각 판사들의 형량을 비교분석하거나 판결문작성의 패턴을 분석하여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형집행후의 전과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컴퓨터의 활용이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경찰이 도난물품이나 총기 등에 관한 기록을 컴퓨터화함으로써 신고시 신속하게 대조확인하거나, 수배자나 전과자의 명단과 기록을 기억시켜 놓고 수사 및 정보업무 수행에 활용함으로써 능률을 끄낄은 물론이고 누범과 조직범, 중범죄의 타진을 도울 수도 있다. 나아가서 형사법원·검찰·교정당국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범인이나 수인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입력시켜서 종합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범인의 간생 및 범죄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과학조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조사자료를 중앙에서 집중종합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센터형태의 기구를 설치·강화하여 일선조사기관의 터미널과 직접 연결하여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지

문감식, 음성감식, 필적감식, 색도감식, 인상감식 등 특수감식용 컴퓨터가 도입되거나 보강되어야 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의 입력과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자료입력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기록한 부동산공부의 전산화는 조세·국토관리·경찰·군사 등 여러 행정목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인 바 위에서 지적한 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행정전산망의 제1단계적 입력대상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하였거니와 컴퓨터의 발달은 사실 법률실무에 있어 가장 팔목할만한 변화를 초래할 조짐이 보인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변화인 것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법문화가 안고 있는 구조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사회의 다른 영역에 비추어 볼 때 정보화의 단계가 가장 韻進의으로 진행될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소송보조체계(CALS)는 아예 말할 필요도 없으며 법령도 판례도 저장된 전문데이터 베이스가 언제쯤 나올지 전혀 가늠할 길도 없다.

1960년대 후반 오하이오주 변호사협회가 법률사무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를 OBAR란 작은 회사에 용역으로 위촉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곧 이 프로젝트가 Mead Data Central에 넘어가서 운영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 LEXIS의 전신인 셈이다. 이에 비해 또 다른 법률전문데이터·베이스인 WESTLAW는 1975년에 데이터의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전자보다 다소 늦게 출발하였다. LEXIS가 Mead Data Central사의 하드웨어 만으로 사용이 가능함에 반해 WESTLAW는 기존의 마이크로 컴퓨터기종의 대부분 및 워드 프로세싱 터미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따라서 압도적인 다수의 미국변호사들이 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든 우리도 언젠가는 이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법률실무가 보편화 되리라 보며, 그때를 예상하면서『明律上』라는 가상의 변호사가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하루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보기로 하자.

명변호사는 아침 9시를 조금 지나 서초동에 있는 그의 사무소에 도착한다. 옛날과 달리 그의 책상위에는 두툼한 법전도 법서도 없다. 그저 『키보드』와 『비디오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터미널 한 대가 달랑 큼직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을 뿐이다.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버튼을 눌러 스크린속을 들여다 본다. 그의 일정표에는

3일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할 공판서류의 준비, 그리고 12시 중앙물산(주) 측과의 점심약속, 오후 2시에는 새로 수임할 사건의 인터뷰약속 등이 나타났다.

변호사는 곧 이어서 전자우편(eletronic mail)을 점검해 본다. 스크린에 나타난 바로는 명변호사의 또 다른 고객인 새한무역의 사장이 그에게 보낸 그의 보유주식에 관한 서류사본이 있었으며 아울러서 지방출장중인 동료 변호사 하나가 보낸 계약서류도 이미 도착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오전중에는 공판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명률사는 테이블 앞에 앉아 먼저 컴퓨터로 하여금 고객인 사건당사자의 서류를 검색하도록 키를 눌렀다. 곧 이어서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하여 여러 측면의 법적 쟁점을 분석·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명변호사는 컴퓨터 스크린을 분리서면(split-screen)으로 갈라놓고 한쪽에는 데이터 베이스로 부터 받은 자료를 다른 한쪽에는 변호요지의 초안을 작성해 나가기 시작한다. 마침 기술정보 가운데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길래 비법률 데이터 베이스에도 잠시 연결하여 확인할 정도로 명률사는 일처리가 깔끔하기로 소문나 있다.

그러는 가운데 초교가 완성되었고 프린터로 찍어 본 다음 그것을 컴퓨터를 통해 자기 여비서방에 전자복사의 형태로 보낸다. 이것은 비서의 터미널에 서류철을 해두기 위한 것이다. 점심시간이 될려면 거의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대충 오전 일은 끝낸 셈이다.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 명변호사는 오전중 작업을 하였던 사건의 소송의뢰인에게 그 소송시간에 상당하는 청구금액, 데이터·베이스사용료 등을 그의 계정에 입력시킨다. 좋은 오찬과 오후의 사건인터뷰를 마친 다음 귀가하기 전 명수헬스클럽에 들린다.

저녁 식사후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오늘 다룬 사건과 관련된 미심쩍은 사항이 머리에 떠오른다. 즉시 명률사는 집의 서재에 있는 포터블·마이크로 컴퓨터를 전화선에 연결하여 그의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끌어낸다. 머리속에 문득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한 이해상충의 문제는 아님이 밝혀졌다. 내일 아침 일찍 대구에 다녀와야 될 것이므로 여느때보다는 일찍 취침한다. 물론 그 다음날 떠날 때에는 포터블·컴퓨터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야만 전화선을 통해 사무실에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정보의 필요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포터블·컴퓨터로 대구에서나 또는 오가는 길에서 전자우편의 형태로 자기 사무실에 필요한 정보를 되보낼 수

도 있음은 물론이다.

## V. 맷는 말

불과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도 제2단계적 정보사회에로 이행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구축된 정보통신망속에서 사뭇 달라진 삶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단순한 가상만이 아님은 이번 서울 올림픽의 GIONS(경기정보시스템)와 WINS(올림픽종합정보망)로 대표되는 자체 개발의 정보기술능력으로써도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최소한 우리사회의 이같은 발전과정에서 법의 사회공학적 기능이란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극히 미미했음이 분명하다. 법은 법대로 우리의 사회변동에 유도적이기는 커녕 심한 저진성을 보이면서 제몫을 다하지 못하여 왔다. 법학은 방법론 부채 속에서 다른 사회과학으로부터 크게 소외되어 있다고 하여도 지나칠게 없다.

정보화의 심화에 대한 법과 법학의 대응도 바로 이같은 냉혹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앞에서 짚어본 바와 같이 바로 이 시점은 행정전산망의 본격 가동을 불과 몇달 앞두고 있는 때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초래할 엄청난 법적 함축과 당연히 예견되는 충격파에도 불구하고 법실무가나 법학자들 사이에 크게 논쟁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 베이스화의 부진을 해결하고 공공데이터의 일반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공개법안이나 행정전산망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이 부처간 관할경합의 와중에서 과학기술처에 의해서 준비중이라는 사실에도 눈을 돌려야겠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법영역에서의 공통된 문제점이라면 그것은 이 이상의 단편적 접근방법(piecemeal approach)은 고도정보사회에의 법적 대응으로서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초래하고 있는 변화에 체계적인 법적 접근이 다른 어느때보다 요청되는 깊도 거기에 있다.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법과 변화해야 할 법의 윤곽을 제공함에 있어 이 글이 하나의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 ♣